

# 『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## 2. 제안이유

-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하여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읍·면에 걸쳐 있어
- 해당 읍·면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능률을 높이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.

## 3. 주요내용

- 낙정지구
  - 옥성면 구봉리 일부(56필지 93,191㎡)를 도개면 용산리에 편입
- 낙산지구
  - 도개면 신림리 일부(16필지 3,007㎡)를 해평면 일선리에 편입
  - 선산읍 독동리 일부(76필지 78,489㎡)를 해평면 낙산리에 편입
- 해평 1, 2, 3지구
  - 산동면 성수리 일부(32필지 36,831.1㎡)를 해평면 문량리 편입
  - 해평면 문량리 일부(67필지 18,614㎡)를 산동면 성수리 편입
  - 산동면 성수리 일부(13필지 7,530㎡)를 해평면 괴곡리 편입
  - 해평면 괴곡리 일부( 8필지 1,224㎡)를 산동면 성수리 편입

## 4. 참고사항

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1항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하여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읍·면에 걸쳐 있어
- 해당 읍·면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임.

### ○ 주요 내용은

- 낙정지구, 낙산지구, 해평 1, 2, 3지구내 필지를 해당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새로운 읍·면에 편입하는 내용임. (5개 읍면 268필지 238,886.1㎡)

### 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둘 이상의 읍·면에 걸쳐 있는 농지의 경계를 조정해 줌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, 지역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- 향후 관련 필지의 공부 정리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.